



‘분량’으로 승부 보려는 어떤 재판 이혜온 변호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딴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글로 쓰인 콘텐츠는 영상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다. 그것도 짧은 영상과 글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숏폼’ 콘텐츠가 대세다. 바뀐 시대에 맞게 글쓰기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들 한다. 미국의 유명 미디어 스타트업 ‘악시오스’ 창업자들이 쓴 글쓰기 방법론 책〈스마트 브레비티〉에 따르면, “간결은 자신감이다. 장황은 두려움이다.”, “짧게, 하지만 알지 않게.”, 쓰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여전히 글의 길이와 기록의 무게로 경쟁하는 곳이 있다. 법조계다. 수사 기록의 분량이 방대할수

록 중요한 사건으로, 제출하는 서면의 길이가 길수록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로 평가된다. 상대방이 수십 장에 달하는 서면을 내면 괴롭다. 증언부언하는 서면이라도 고객은 일단 분량에 기세가 압도되어 초조해한다. 장황함이 전략인가 싶을 때가 있다.

그래도 법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2016년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면 분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서면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꼭 해야 할 말을 빠짐없이 간결하게 쓰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법조계는 수사기록의 분량이 방대할수록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형사재판은 여전히 ‘분량’으로 승부를 보려는 영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 기록이 ‘시간’과 ‘효율’을 넘어 피고인의 ‘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기소되면 법원은 공소장만 보내준다. 재판에서 다투려면 직접 검찰청에서 수사 기록을 복사해와야 한다. 복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빼더라도 복사비만 1장에 50원이다. 얼마 전에도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수사 기록 복사비만 50만원 넘게 나왔다. 종이 기록은 그래도 짝 편이다. 2020년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영상과일은 전체 용량이 3.78TB였고, 당시 검찰 증거 영상 복사 수수료 규정은 700MB당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이어서 2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할 판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돈’과 직결된 수사 기록

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무부는 수수료 규정을 ‘법원 기준’으로 바꾸었다. 수수료가 7분의 1 정도로 낮아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백만 원이다. 수사 기록 복사 비용은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재판에 든 여비나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보상하지만, 수사 기록 복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에 여전히 종이 복사만 가능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어렵게 복사해온 수사 기록을 넘기다 보면, 이 증거가 굳이 꼭 필요한 증거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방대한 수사 기록에 피고인은 일단 위축되지만, 때로는 소송 상대방이 보여주기로 분량을 ‘뿔아낸’ 서면을 읽는 때와 비슷한 기분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기록만 ○○○만 쪽, 검찰 ‘입증 자신’”과 같은 기사가 보도될 때가 많다. 하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고 항상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이 꼭 필요한 문장인지, 이 증거가 꼭 필요한 증거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문화가 법조계에도 정착되면 좋겠다. 방대한 기록은 성실함의 증거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간절이 자신감이다.

(저작권자/ 시사IN)